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04월 09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1년 04월 19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6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1년 04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농업축산과장)

가. 제안이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어촌유지 등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 지급대상 및 수당지급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지급액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급 신청 및 확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이의신청, 미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준용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현진)

- 본 조례안은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관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취지가 있습니다.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2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 제외대상

안 제7조에서는 지급액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급 신청 및 지급 제외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강원도에서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원도 내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도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농업인 소득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종합적인 정책시행 의무”를 근거하였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년 3월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창군도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를 마련하고자 제정취지가 있습니다.

- 지원사업의 재원구성은 도비 60%, 군비 40%이며,
평창군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접수기간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 조건”은
2년이상 계속해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경작 면적은 ‘강원도 지침 상’ 1,65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배우자, 농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제외됩니다.

- 본 조례안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지자체 책무를 따르며,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근거하여
우리군 사업추진 근거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1부.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

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에 대한 협의 이행을 위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

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이 합의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평창군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9조(이의신청)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때,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강원도 외의 지역으로 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이 2021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